

문도	필요	특요
과장	부장	

# 기안용지

(전화: 731-6349)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설30310- 200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
수신처 보존기간	10년.
시행일자	89. 5. 18

시행상 특별취급	시 장
-------------	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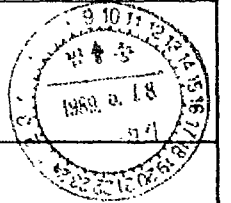


김영수

보조 기 관	도시계획국장 선 결	협 조 기 관
	시설계획과장	
	가로계획과장	
기안책임자	나 성 수	

법무담당관실사원  
협조통계행정과장

문서통제
1989. 5. 18
반송인


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 명 의	시 장
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

제 목 : 도시계획시설(하천)변경결정

(제1안) : 내부결재

1. 송파도정30312-300('89.3.25)호와 관련입니다.
2.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(하천)변경 요청받은 안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요청 합니다.
3. 본건은 우리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('89.4.25)에서 심의

가결된 사안 입니다.

첨부 : 1) 관계서류 1건.

2) 고시문 1부. 끝.



(제2안)

3468
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

제목 : 같 음.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

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(제3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.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하천)변경결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
바. 게재내용 : 별첨.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

(제4안)

수신 : 송파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같 음.

3469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하천)이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되었기

통보하니 도면 정리하고 관련업무에 착오 없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 끝.

(제5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 - 332

발신 : 과장



제목 : 같 음.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하천)이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되었기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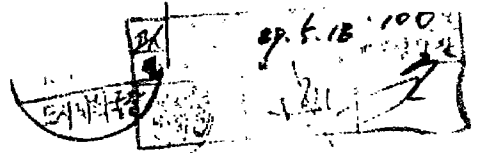
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치수과장, 도시계획과장.

3470

서울특별시 고시 제 236호  
도시계획시설(하천) 변경결정

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송파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일 니다.

1989. 5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하천) 변경결정

구분	폭원(m)	연장(m)	시 심	종 심	비 고
기정	25-85	2,712	마천동200	고금동 30	서고409('79.9.17)과
변경	"	2,387	"	요금동171	서고703('85.10.17)로 이중결정된 상내천계획선 330m 구간중 '79.9.17. 고시선 표시

나. 도면 : 관할구청 비치도면과 같음. 끝.

위례성경

지리현량동상리현 (조지)

도시계획리현 (조지)

위례성경지계

$\beta = 85 \sim 90^\circ$

$\beta = 80 \sim 85^\circ$

2012. 11. 14  
83.12.14 A281/P  
24.11.20

2012. 11. 14  
83.12.14 A281/P  
24.11.20

3172

